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유 급 지 원 병 제 운 영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공포, 2021. 6.23.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절차 및 선발 취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병역법에 따라 “유급지원병”이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개정
(안 제1조 ~ 제6조)

나. 병역법에 따라 연장 복무기간을 “6개월 ~ 1년 6개월”을 “6개월 ~ 4년까지”로 확대 개정(안 제2조)

다. 임기제부사관 임용과 임용 전 교육 규정 신설 (안 제4조)

라. 임기제부사관의 직업적 안정성 보장을 위해 장기복무 전형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보수교육 및 복무분야 변경 근거조항 신설
(안 제2조, 제5조)

마. '18년 8월 제도개선으로 병무청에서 직접 선발하던 제도의 폐지에 따라 불필요 조항은 삭제하고, 현재 법령상 미비한 군 특성화고 출신의 선발규정 신규 반영 (안 제3조)

바. 병역법에서 선발 취소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미비하므로, 임용 전 선발 취소를 희망할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안 제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월 초 ~ 3월 중순)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을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유급지원병의 선발과 복무 등 유급지원병제”를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복무, 취소 등 임기제부사관제”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복무기간)”을 “(복무기간 및 장기복무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급지원병으로 연장복무 중인 자가”를 “임기제부사관이”로, “전체 연장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복무하게 할”을 “총 복무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6개월에서 4년까지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의 복무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모집할 때 정한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제부사관의 장기복무 지원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를 따른다.

제3조의 제목 “(유급지원병의 선발)”을 “(선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병역준비역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서 복무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역준비역으로서 임기제부사관 선발에 지원한 사람은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다만,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경우에는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용)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치면 임기제부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 전에 부

사관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 및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을 교육하여 원활한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한다.

제5조의 제목 “(연장복무의 중단)”을 “(복무 분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발된 임기제부사관은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복무하게 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발된 임기제부사관은 정비·전투지휘 등 숙력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복무하게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이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군인사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장기복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도록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임기제부사관의 복무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부사관의 복무 분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선발 취소 및 연장복무의 중단)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임용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기제부사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선발 취소를 원하는 경우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법 제20조의 2제5항에 따라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 심신장애 및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전달된 사람”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u>	<u>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u>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u>유급지원병의 선발과 복무 등 유급지원병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임기제부사관의 선발, 복무, 취소 등 임기제부사관제</u> ----- -----.
제2조(복무기간)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u>유급지원병(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한다)의 연장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자는 3년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기간</u> 2. <u>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자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미리 정하여 모집할 때 제시한 기간</u>	제2조(복무기간 및 장기복무 지원)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6개월에서 4년까지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의 복무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모집할 때 정한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한 기간으로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유급지원병으로 연장복무 중인 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체 연장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유급지원병의 선발) ①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선발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역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모집계획서” 및 “현역병모집계획서”는 “유급지원병 모집계획서”로, “현역복무지원자”는 “유급지원병 복무지원자”로, “현역병지원서”는 “유급지원병 지원서”로, “현역병입영통지서”는 “유급지원병 입영통지서”로, “현역병선발취소신청서”는 “유급지원병 선발취소신청서”로, “현역병선발취소자명부”는 “유급지원병 선발취소자명부”로 본다.

② ----- 임기제부사관이 -----
----- 총 복무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할 -----
-----.

③ 임기제부사관의 장기복무 지원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를 따른다.

제3조(선발)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병역준비역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서 복무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선발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유급지원병의 선발기준, 모집공고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입영 후 일정한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유급지원병으로 복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4조(복무 분야)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복무하게 한다.

② 병역준비역으로서 임기제부사관 선발에 지원한 사람은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

④ 제3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다만,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경우에는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다.

제4조(임용)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치면 임기제부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 전에 부사관으로서 필요한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정비·전투지휘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복무하게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복무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연장복무의 중단) 각 군 참모총장은 유급지원병으로 연장복무하는 자가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연장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 심신장애 및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기본소양 및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을 교육하여 원활한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한다.

제5조(복무 분야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발된 임기제부사관은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복무하게 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발된 임기제부사관은 정비·전투지휘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복무하게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이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군인사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장기복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도록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임기제부사관의 복무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부사관의 복무 분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조(선발 취소 및 연장복무의 중단)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임용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기제부사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경우

2.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선발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 심신장애 및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135